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

과업지시서

2022. 11. 1.

나노전자소재부품연구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

2. 과업의 목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나노전자소재부품연구센터에서 수행중인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구축사업(사업기간 : 2021.09.01.~2023.12.31., 연구책임자 : 김윤갑 연구단장)』의 원활한 수행 및 홍보를 위해 LED 방식의 옥외 간판(1식) 설계 및 제작·설치와 기존의 설치된 지주식 간판에 대한 도색·시트지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설치장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구, 대경권태양광테스트베드센터)

나. 설치규격

- [신규] 옥외 LED 간판 : 16.5m × 0.95m

- [기타] 지주식 간판 : 기존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도색 및 시트지 작업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라. 추정가격 : 12,210천원(VAT포함)

마. 계약방법 : 기술원 홈페이지 공개 견적 공고(예정)

4. 과업수행 기본방향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의 위치 파악과 효과적인 홍보 목적으로 센터 건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옥외 간판(LED 조명 포함)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치

II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 가. 옥외 LED 간판 디자인(시안), 제작 및 설치(1식)
- 나. 기존 설치된 지주식 간판에 대한 도색·시트지 작업(1건)
- 다. 기존 간판 철거 및 폐기처리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간판의 제작·설치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가) 과업기간 내, 기존 간판에 대한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완료
- 나) 간판 디자인(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시안, 산출내역서 및 상세작업내역 각 1부

2) 옥외 LED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 일반기준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일 반 지 침	■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 구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범위 내에서 디자인(시안)
수 량	■ 가로형 LED 간판 1식
재 질	■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 ■ 날 글자(총 15자) 채널 문자 간판 ※ 재질 샘플 확인 후, 간판 설치
색 채	■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색채 사용
조 명	■ 야간에도 표현하고자하는 문자에 대한 인식(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LED 조명 채용 ■ LED모듈(12W, 1,500개 이상), SMPS-전원 변환 공급장치(300W, 1개) 설치
글 씨 체	■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글씨체 사용
벽 면 이 용 간 판 (가 로 형)	■ 건물 외부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베이스판 설치 후 입체형 설치) ■ 간판 크기 : 16.5m × 0.95m 이상 (문자 채널 크기 : 950mm × 940mm × 80mm)
기 타	■ 간판 설치 시, 안전성 및 시안(디자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기존 간판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시, 관련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

※ 일반기준의 간판설치 기준 변경사항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단, 지주식 간판에 대한 과업은 단순 도색 및 시트지 작업으로 별도의 설치기준을 두지 않는다.)

나)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간판 디자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으로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게시틀 (가로형간판 베이스 채널바)을 설치

다) 색상 및 디자인

(1) 건축물의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상 및 건축물의 규모, 형태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하되 주변 경관의 자연미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 주변의 자연적 특성과 입지를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글씨(문자)체는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의 특성(이미지)에 맞도록 디자인한다.

(4) 야간에도 경북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라)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및 제작하여야 한다.

3) 간판 재질 및 마감재 등

가) 간판 주재료는 옥외 환경 조건에서도 충분히 동작하고, 견딜수 있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나)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그 형태나 색채가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간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표준(KS)규격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간판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가) 보행자 및 건물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안전성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가 쉽고,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시공된 간판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최소 1년(무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업(용역)수행자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귀책 사유가 건물주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만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한다.
- 4) 과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시공 중, 디자인(시안) 변경 사항이 발생시 과업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나) 디자인 변경 사유로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중지를 발주청에서 지시하였을 때

다)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지체 사유가 발주청에 있을 때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과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조건

- 1)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대가(용역비)는 용역 결과 제작설치비 증가 또는 용역성과품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수급자(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교체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만 한다.
- 2)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에는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아.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또는 추가자료 발생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 1)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착

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행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자인 보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도면 등)에는 과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과업 시행에 앞서 필요시에는 발주청의 관련 부서에 사전협의 및 자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 5)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과업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 6)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 7)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는 국내 및 국외의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주 공정에 관련된 물품 확정시(포장 재질 및 색채 등) 확정 예정인 물품이 시공 완료된 선진지를 사전 답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8) 기존 간판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계획 수립 후, 디자인 및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9) 간판은 자중 및 풍압 등을 고려하여 탈락,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안내사항

- 가. 시공 중, 디자인(시안) 변경 및 제작설치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나.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KS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 라. 간판 제작 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 가. 디자인(시안)이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 마. 옥외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을 건별로 촬영하고, 완공 시 제출하여야만 한다.
- 바. 간판 제작·설치 완료 후, 감독관에게 설치확인서 사인을 받아 준공계, 준공검사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가. 작업자가 디자인(시안)과 상이한 제작 및 설치(철거)를 할 경우
- 나. 불완전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지연 또는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라.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행정사항 및 기타

과업수행 시,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하고, 만약 과업수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